KOSHA GUIDE H - 118 - 2013

곡물분진 및 곡분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

2013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작성자 :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권영준
- 제·개정 경과
- 2013년 10월 산업보건관리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- 관련규격 및 자료
- KOSHA GUIDE H-46-2011. 천식을 진단받은 근로자의 업무적합성 평가 지침
- KOSHA GUIDE W-1-2012. 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
- KOSHA GUIDE H-82-2012.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지침
-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. 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: 제3권 유해인자별 건강장해, 분진-1 곡물분진. 보건분야 기술자료 연구원 2010-107-955
- 김치년 등. 화학물질 노출기준 제개정(안) 연구-곡물분진, 한국산업안전 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(보고서), 2006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(보건조치)
-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(유해인자의 관리 등)
-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(작업환경측정 등),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(작업 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등)
-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(건강진단),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(정의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편 보건기준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 페이지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13년 12월 일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KOSHA GUIDE H - 118 - 2013

곡물분진 및 곡분 노출 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

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4조(보건조치), 제39조(유해 인자의 관리 등), 제42조(작업환경측정 등), 제43조(건강진단)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(이하 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3편(보건기준) 제1장(관리 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)의 규정에 의하여 곡물분진 및 곡분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예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곡물분진 및 곡분이 노출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.

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- (가) "곡물 분진"이란 제분작업 전에 가공되지 않은 쌀, 보리, 밀, 귀리 등 식용 곡물에서 발생하는 먼지(분진)를 말한다.
 - (나) "곡분 분진"이란 함은 곡물을 빻거나 갈아서 만든(제분) 미세한 가루에서 발생하는 먼지(분진)를 말하며, 보통 밀가루, 쌀가루 등의 분진이 포함된다.
 - (다) "곡물분진과 곡분작업"이란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제24항의 곡물을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곡물을 계량·투입·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한다.

H - 118 - 2013

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산업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4. 곡물분진 및 곡분 노출 작업과 건강장해

4.1 곡물분진 및 곡분 노출 공정 및 업종

- (1) 곡물 분진은 곡물의 하역과 운반, 분쇄, 선별, 포장 등의 공정에서 발생되며, 분진 발생이 높은 작업은 하역작업, 세척 및 선별작업이다. 곡분(주로 밀가루)은 곡물 도정 및 제분 공정에서 노출되며, 제빵 제조업의 경우 배합, 정형, 운송, 원료소분, 신제품 개발 공정에서 노출된다.
- (2) 곡물분진 및 곡분 노출 업종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, 곡물도정업, 곡물제분업,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,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,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, 당류 제조업, 사료 제조업, 빵류 제조업, 곡분과자 제조업, 코코아 제품 및 설탕과자 제조업, 국수, 라면 및 유사식품 제조업, 곡물 도매업, 빵 및 과자 도매업, 곡물 소매업, 빵 및 과자류 소매업, 제과점업 등에서 특히 다음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노출위험이 높다.
- (가)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곡물의 수확 시부터 운송, 저장 및 가공과정에서 곡물 분진에 노출된다. 특히 저장 창고 혹은 싸이로를 청소하거나 비울 때에는 부패되었거나 또는 곰팡이 낀 골물분진에 노출 될 수 있다.
- (나) 곡물을 가공하는 근로자들에서 노출 위험이 있다. 특히 곡물제분공정에서는 높은 농도에 노출될 수 있다.
- (다) 가공된 곡물을 이용하는 식품 가공 근로자들이 노출 된다.

4.2 곡물분진 및 곡분의 유해위험 요인과 건강영향

H - 118 - 2013

- (1) 곡물분진은 60~75%가 유기화합물, 25~40%는 무기화합물이 포함되어 있다. 곡물분진은 곡물 자체 및 곡물의 분해산물, 흙과 같은 무기물과 미량의 화학물질, 미생물, 설치류나 조류의 깃털, 배설물, 곤충 분해산물, 진드기, 비료, 농약(살충제, 살균제, 제초제) 등이 포함되어 있다.
- (2) 곡물분진 및 곡분에 의해 천식 및 호흡기 증상이 유발될 수 있다. 특히, 제빵시 밀가루를 다루는 근로자에서 발생하는 천식은 잘 알려져 있다.
- (3) 일반적으로 4 mg/m³ 이하의 곡물분진에 노출될 경우 급성 기관지염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, 6.6 mg/m³ 정도의 농도에 노출되면 작업 전후에 폐기능의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.
- (4) 급성영향으로는 자극성 또는 알레르기 비염, 자극성 또는 알레르기성 천식, 유기 독성 분진증후군(organic toxic dust syndrome, OTDS)등이다. 유기독성 분진 증후군은 곡물분진에 포함된 곰팡이 독성(mycotoxin)과 그람 음성 세균의 내독소(endotoxin)에 의해 발생하며, 노출 후 6-8시간 후에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 있다.
- (5) 만성적으로 곡물분진 및 곡분에 노출될 경우 만성 기관지염이나 비가역적인 기도폐쇄로 발전할 수 있다. 만성 기관지염이 종종 입사 후 수면 내에 발생할 수 있지만 유의한 기도폐쇄는 보통 10년 이상 근무한 후 발생한다.
- (6) 곡물분진 및 곡분의 주요 건강영향은 요약하면 직업성 천식, 과민성 폐장염, 급성열 증후군(acute febrile syndromes), 비특이적 기도폐쇄, 만성기관지염 및 비염이다.

5. 작업관리

5.1 사업주 및 관리자가 취해야 할 조치

(1) 사업주는 모든 작업공정에 대한 표준작업지침서를 작성하고 근로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 감독한다. 표준 작업관리지침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.

H - 118 - 2013

- (가) 곡물 및 곡분 분진 발생 억제조치 설비의 설치
- (나) 노출 공정에 사용되는 환기장치의 적절한 가동요령 등에 관한 사항
- (다) 적절한 호흡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, 관리방법
- (라) 곡물 및 곡분 분진 노출로 발생 가능한 건강영향 등 유해성 정보와 응급 조치 등에 관한 사항
- (마) 기타 곡물 및 곡분 분진 노출 방지를 위한 사항 등
- (2) 곡물 및 곡분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를 노출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 및 관리한다.
- (3) 주기적인 작업환경 측정을 통해 노출 정도를 평가하고 관리한다.
- (4) 주기적인 건강진단(일반, 특수)을 실시하고 정해진 안전보건교육시간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장해를 예방한다.
- (5) 휴게실, 식당과 분진 노출 작업장은 격리한다.

5.2 근로자 준수사항

- (1) 곡물분진 및 곡분에 의해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지한다.
- (2) 고농도의 곡물분진 및 곡분 노출은 밀폐 공간에서 발생될 수 있다고 인지한다.
- (3) 곡물 취급 작업 시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(방진마스크)를 착용한다.
- (4) 음식을 먹기 전에 손과 얼굴을 씻고 작업지역에서는 금연한다.
- (5) 작업장을 벗어날 때에는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는다.
- (6) 건강진단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한다.

H - 118 - 2013

- (7) 현장의 정리, 정돈, 청소 등 청결을 유지한다.
- (8) 작업은 가능한 한 습식화한다.

5.3 일반적인 작업 관리

- (1) 밀가루 등 곡분을 투입하는 경우 포대를 들어 투입하지 않고 작은 삽 등의 기구를 이용하여 투입하여 비산 분진을 감소시킨다.
- (2) 기구를 이용하여 배합하는 경우 회전 속도를 느리게 하여 비산 분진을 감소시킨다.
- (3)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습식 청소 및 흡입용 청소기를 이용하여 비산 분진을 감소시킨다.

5.4 교육

곡물분진 및 곡분에 노출되는 근로자 및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될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특별안전보건 교육을 16시간 이상 실시한다.

- (1) 당해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곡물분진 및 곡분의 종류에 관한 사항
- (2) 곡물분진 및 곡분에 의한 건강영향과 예방대책
- (3) 직업병 예방을 위해 취해진 현재 조치 사항 및 유지, 관리 요령
- (4) 공정별 표준작업 요령
- (5)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
- (6) 보호구의 사용법 및 관리방법
- (7) 응급처치방법

H - 118 - 2013

(8) 기타 안전 · 보건상의 조치 등

6. 작업환경관리

6.1 작업공정의 적정 배치

작업장 내에 곡물분진 및 곡분 취급업무가 이루어지는 작업공정을 배치시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.

- (1) 해당 공정이 분산 배치되지 않도록 하고 다른 작업장과 격리시킨다.
- (2) 해당 공정을 가능한 자동화한다.
- (3) 관련 기계, 기구 등을 배치할 때는 기능한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에게 분진 노출을 최소화한다.

6.2 분진 발산원의 밀폐 등 조치

- (1) 작업상 필요한 개구부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밀폐시킨다.
- (2) 곡물분진 및 곡분의 보관 장소 등 밀폐된 작업 장소의 내부는 전체환기 장치를 설치하여 음압으로 유지한다.
- (3) 작업특성상 밀폐실 내부를 음압으로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또는 개구부 등을 통하여 분진이 노출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 분진 발산을 최소화한다.

6.3 환기

6.3.1 전체환기

H - 118 - 2013

사업주는 곡물분진 및 곡분에 노출되는 공정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의 배기량을 보충하는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. 설치하지 않은 경우 국소배기장치의 필요 송풍량이 달성되지 않는다.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따르는 것이 좋다.

- (1) 외부공기는 가능한 신선한 공기가 공급되는 장소여야 한다.
- (2) 외부공기가 유입되는 송풍기나 급기구에는 필요시 외부로부터 유해물질의 유입을 막기 위한 필터나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- (3) 작업장 외부로 배출된 공기가 당해 작업장 또는 인접한 다른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(4)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할 때 국소배기장치에서 배기되는 송풍량을 고려하여 그 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정한 필요 환기량을 산정하여야 한다. 필요 환기량의 산정은 "환기설비에 관한 기술지침(KOSHA GUIDE W-1-2012)"의 <별표1>을 참고한다.

6.3.2 국소배기장치의 설치

작업특성상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 특성에 적합한 형식과 성능을 갖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한다.

- (1) 국소배기장치의 후드는 작업 방법, 분진 발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분진을 흡인하기에 적당한 형식과 크기로 한다.
- (가) 후드는 발산원마다 설치한다.
- (나) 후드의 형식은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(다)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식 또는 레시버식 후드를 설치하되 분진이 발생되는 발산원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한다. 후드로 들어가는 공기 방향이 근로자 호흡기를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H - 118 - 2013

- (2) 국소배기장치의 덕트 길이는 가능한 짧게 하고 굴곡부의 수를 적게 하여 압력손실을 최소화한다.
- (3) 국소배기장치는 후드, 덕트, 공기정화장치, 송풍기, 배기구의 순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(4) 국소배기장치의 배기구는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한다.
- (5) 국소배기장치의 배기구 높이는 옥상 또는 옥상, 난간상부로부터 건물 높이의 0.5배 이상으로 하여 배출된 곡물분진 및 곡분이 당해 작업장으로 재 유입되거나 인근의 다른 작업장으로 확산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.
- (6) 배기구는 전체환기장치의 외부 공기 유입구와도 15 m이상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
- (7) 국소배기장치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체흡착 방식, 연소 방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한다.
- (8)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은 물질의 상태에 따라 <표 1>에서 정하는 제어풍속 이상이 되도록 하다.

$< \frac{\Omega}{\Omega}$	1>	국소배7	l 장치	후드의	제어풍속

물질의 상태	후드 형식	제어풍속(m/sec)
	포위식 포위형	0.7
입자 상태	외부식 측방흡인형	1.0
합시 장대	외부식 하방흡인형	1.0
	외부식 상방흡인형	1.2

- 1. 물질의 상태에서 "입자상"이라함은 발암성물질이 후드로 흡인될 때의 상태가 흄, 분진 또는 미스트인 경우를 말한다.
- 2. 이 표에서 제어풍속이란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상태에서 측정한 제어풍속을 말한다.
- 3. 이 표에서의 제어풍속은 후드형식에 대하여 각각 다음에 정한 위치에서 풍속을 말한다.
 - (가) 포위식 후드에서는 후드 개구 면에서의 풍속
 - (나) 외부식 후드에서는 당해 후드에 의하여 발암성물질을 흡인하고자 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후드 개구 면으로부터 가장 먼 작업위치의 풍속

H - 118 - 2013

6.3.3 국소배기장치의 정상 가동

곡물분진 및 곡분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설치된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.

- (1) 국소배기장치는 설치 목적에 알맞도록 가동하고 작업 중에 작업자가 임의로 가동을 중지시킬 수 없는 구조로 한다.
- (2) 국소배기장치가 정상 가동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이상 상태를 즉시 인지 할 수 있도록 경보장치 등을 설치한다.
- (3) 후드 가장자리에 가벼운 끈 등을 부착하여 제어되는 방향과 강도를 근로자가 보고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.
- (4) 곡물분진 및 곡분이 발산되어 화재·폭발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, 장비 등의 가동이 자동적으로 중단되도록 한다.
- (4) 작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작업장 내에 분진이 발산되는 제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유해요인이 제거될 때까지 국소배기장치를 계속 가동한다.
- (5) 당해 국소배기장치의 가동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필요할 때는 가동일지 등을 기록, 보관한다.

6.3.4 국소배기장치의 관리

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 사용하거나 분해하여 개조 또는 수리한 후 재 사용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청소, 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성능이 유지되도록 한다.

- (1) 덕트 및 배풍기의 분진 퇴적 상태
- (2) 덕트 접속부의 이완 유무

H - 118 - 2013

- (3) 흡기 및 배기 능력의 적정성
- (4) 기타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

6.3.5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 실시

- (1)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의거하여 작업 중 국소배기장치(제진장치 및 배출가스 처리장치포함)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, 보존하여야 한다.
- (2)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체검사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.

6.4 개인 호흡용 보호구

- (1) 곡물분진 및 곡분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호흡기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인증을 받은 개인전용 호흡용 보호구(방진마스크)를 착용 한다.
- (2) 호흡용 보호구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"호흡용 보호구의 사용지침(KOSHA GUIDE H-82-2012)"을 참고한다.

7. 곡물분진 및 곡분 노출 사업장의 보건관리

7.1 작업환경 평가

- (1) 사업주는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해 작업환경측정 계획 수립, 측정 실시, 작업환경 평가를 하여야 한다.
- (2) 노출기준은 하루 8시간 근무할 때 시간가중평균농도(Time Weighted Average: TWA)로 곡물분진은 4 mg/m³, 곡분분진은 0.5 mg/m³로 고시되어 있다(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,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-31호).

H - 118 - 2013

- (3)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- (4)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. 방법은 게시판 부착, 사보 게재, 교육시간을 통한 방법 등 해당 근로자들이 결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한다.

7.2 곡물분진 및 곡분 노출 근로자 건강관리

- (1)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, 시행규칙 별표 12의2(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)에 의해 곡물 및 곡분 분진 노출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, 특수 건강진단,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.
- (2) 건강진단을 할 때 고려사항
 - (가) 곡물분진 및 곡분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다. 이때 호흡기 질환(특히, 천식)에 유의하여 진찰을 하고, 폐활량 검사 결과에 유의하여 관찰한다.
 - (나) 폐활량검사 표준화된 방법에 의해 정도관리를 수행하는 인증된 실험실에 서 검사하여야 하며 정상범위는 각각의 실험실에서 정한 참고 값을 기준 으로 한다.

(3) 건강진단 실시방법

건강진단 실시 주기, 건강진단항목, 산업의학적 평가(건강관리구분, 업무수행적합성 여부 평가, 사후관리)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"근로자 건강진단 실무지침: 제2권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방법, 분진-1 곡물분진. 보건분야기술자료 연구원. 2010-107-955"를 참고한다.

(4) 노출 근로자에서 천식이 발병된 경우 중증도를 평가하여 중증도에 따라 업무적합성을 평가하여 근로자가 적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.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천식을 진단받은 근로자의 업무적합성 평가 지침(KOSHA GUIDE H-46-2011)을 참고로 한다.

KOSHA GUIDE H - 118 - 2013

(5) 수시건강진단의 실시

- (가)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증상과 징후를 보이는 경우에 수시건강 진단을 실시한다.
 - "기침, 호흡곤란, 천명, 흉부압박감 등 천식 관련 증상을 보일 때"
- (나) 특수건강진단기관은 사업주가 수시건강진단의 필요성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때에는 자문에 응한다. 이 경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는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의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자문결과서로 통보한다.